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07
----------	-------

발의연월일 : 2026. 1. 23.

발 의 자 : 문정복 · 김영호 · 진선미
김주영 · 김문수 · 홍기원
이성윤 · 손명수 · 민형배
김준혁 · 김영환 · 최혁진
박지원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이 추진됨에 따라 영유아기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과 보육을 포괄하는 정책 지원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관리·지원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영유아 교육·보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역할과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 및 양육 분야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현행 법령상 기관 명칭이 ‘보육’으로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필요한 정책 지원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명칭을 ‘한국영유아교육·보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수행 업무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 이행과 영유아 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

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한국영유아교육·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육서비스”를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로, “보육정책”을 “영유아 중심의 교육·보육 정책”으로, “한국보육진흥원”을 “한국영유아교육·보육진흥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을 “유치원,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으로, “보육서비스”를 “교육·보육 서비스”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5호(종전의 제10호)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부장관은”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1. 영유아의 교육·보육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분석
3. 유치원 교원 및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통합연수체계 마련·운영에 관한 업무

4. 유치원 교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심리 지원 및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업무
5. 영유아의 신체·건강·정서·심리·보건 등 안전에 관한 업무
6. 영유아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7. 영유아의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
8. 영유아의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9.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u>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u>) ① <u>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u> 을 설립한다.	제8조(<u>한국영유아교육 · 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u>) ① <u>영유아교육 · 보육 서비스----- 영유아 중심의 교육 · 보육 정책----- 한국영유아교육 · 보육진흥원-----</u> . -----.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 <u>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정책분석</u>	1. <u>영유아의 교육 · 보육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조사 · 연구 · 분석</u>
2. <u>원활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u> <u><신 설></u>	2. <u>유치원,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 ----- 교육 · 보육 서비스 -----</u>
<u><신 설></u>	3. <u>유치원 교원 및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통합 연수체계 마련 · 운영에 관한 업무</u>
<u><신 설></u>	4. <u>유치원 교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 · 심리 지원 및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업무</u>
<u><신 설></u>	5. <u>영유아의 신체 · 건강 · 정서 · 심리 · 보건 등 안전에 관</u>

<u><신 설></u> <u><신 설></u> 8. <u>영유아 보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u> 9. <u>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u> 3. ~ 7. (생 략)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u>교육부장관</u>,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④ (생 략) ⑤ <u>교육부장관은</u>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u>한 업무</u> 6. <u>영유아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u> 7. <u>영유아의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u> 8. <u>영유아의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u> 9. <u>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u> 10. ~ 14.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15. ----- -- <u>교육부장관 및 교육감</u>---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u> ----- -----. ⑥·⑦ (현행과 같음)
--	---